2022-09호

09

의정정보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09호

09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3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6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8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10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
21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41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제작발표회
44 대구광역시의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46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장 점검!
48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앞장
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00초 영상공모전 당선작 발표



의회

최근 제·개정 법령

53 종합부동산세법
58 소득세법
5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77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질의
8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질의
8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관련질의
86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질의
8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질의
95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질의
99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관련질의
103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질의

09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
-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779호, 2022. 9. 15., 제정]

이 조례는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

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

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제9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민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과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9. 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155호, 2022. 9. 15., 제정]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남읍 서림길 20에 둔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가족센터
2. 공립해남어린이집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함께 돌봄센터
5. 장난감도서관
6. 실내놀이터
7. 소교육실, 대교육실
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공보육 지원 사업
3.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5.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
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관 및 이용료) ① 군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교육실과 대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가족센터의 대관 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대관은 1일 1회 3시간, 월 4회 이하로 한다.

③ 이용은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법인·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용 허가하고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등) ① 가족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376호, 2022. 9. 13., 제정]

이 조례는 천안시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
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
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바우처 및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을 성별, 연령, 계층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법
2. 지원대상 및 기준
3. 지원절차 및 방식
4.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천안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부서 간 협조) ①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 추진 시 지급요건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073호, 2022. 9. 2., 제정]

이 조례는 하남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 등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조정·반영해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참여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하남시에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제안,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현안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정책과제
2. 시의 발전계획과 주요정책 방향성 결정
3. 원활한 시민소통을 위한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4.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구성은 특정 성(性)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2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시장은 성별·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 주요 업무 담당 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평가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의 가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기관·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부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정족수 등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의2(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기획전략, 청년, 일자리, 교육, 문화관광, 여성 및 복지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촉 인원은 분과별 1명 이내로 한다.

제9조(자문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자문단을 둔다.

② 자문단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구성되며, 자문단을 구성하는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3.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내부검토,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및 직권 남용의 금지) 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좌관·자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① 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좌관·자문위원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 및 특별보좌관·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비용지원)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연구·조사 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자문 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산하 시민 모니터링단원이 평가 및 의견수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9.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37호, 2022. 9. 1., 제정]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방산업”이란 한의학에 기초하여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작물·한방의료시설·한방건강체험관광 등 한방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체험에 관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관광자원화”란 한방산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방건강”이란 한방산업을 바탕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4.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약용작물로 분류한 작물을 말한다.
5. “약선음식”이란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식을 말한다.
6. “농·임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관련 조합·법인·연구회·작목반 등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수행) 시장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허준선생묘역 정비
2. 한방건강 체험단지 조성
3. 약선음식 특성화
4.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5. 한방의료시설 유치
6. 역사·문화 유적자원과 연계한 시 관광10선 개발
7.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8. 사업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약용작물 재배 농·임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3.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학술대회·세미나 개최 및 참여
5. 그 밖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방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전략육성 약용작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 유치 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의 농업

기술센터 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산업 및 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시의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2. 8. 31.]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882호, 2022. 8. 31., 제정]

이 조례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양치유해설 · 홍보 · 교육 · 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를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산업”이란 완도군의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치유해설가”란 이용자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산업 등 해양치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양성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해설가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 · 운영하기 위하여 해마다 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 · 활동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치유해설가의 양성 및 운영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치유 이용자 규모, 해양치유자원 현황, 해양치유해설가에 대한 수요 등을 반영해야 한다.

제4조(해양치유해설가의 직무) ① 해양치유해설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능 안내 및 해설
2. 해양치유와 연계된 생태자원 등 대한 탐방 안내 및 해설
3. 건전한 관람 문화 및 체험 예절

유도

4. 해양치유자원 등에 대한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 · 예방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해설가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설가 표식을 착용해야 한다.

제5조(해양치유해설가의 선발 등)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양치유해설가 선발을 위한 이론 및 현장 실습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해양치유해설가로 선발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해양치유해설가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해양치유자원의 개발 · 보급 · 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 등을 포함하는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지원) 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

2. 근무복, 해설 기자재 및 장비

3. 해설 활동 중 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료

4. 해설 활동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해양치유시설,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 및 활동 관리) 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4. 보수교육 이수 여부

5. 제3항에 따른 경고 횟수

② 군수는 매년 해양치유해설가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의 해양치유해설가에 대한 경고 또는 선발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용자와 다투거나 이용자로부터 불친절 신고가 있는 경우: 경고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경고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경고

5.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경고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선발 취소

7. 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경우: 선발 취소

8.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선발 취소

④ 제3항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해양치유해설가는 해설가 표식 및 지원받은 장비를 반납해야 한다.

⑤ 기타 문화관광 시설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요청 할 수 있다.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2022. 8. 2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585호, 2022. 8. 22., 제정]

이 조례는 지역 인구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차별화된 유일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장(場)을 마련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 설치·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 조직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버넌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시책을 결정·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체계를 말한다.
2. “중요사업”이란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추후 구의 발전방향이나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주요시설의 신설, 이전 및 리뉴얼(renewal: 이 조례에서는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주요시설의 후적지 활용 등
   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특구·지역·지구 등 일정한 범위가 지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범위를 말한다)의 조성 및 운영
   라. 엑스포, 비엔날레, 공모전, 그 밖에 박람회·전시회 등(이하 “공모전등”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사항
   마. 대기업, 학교, 연구시설, 공장, 은행, 대형병원, 물류센터, 쇼핑시설, 호텔, 유원시설 등의 유치 및 역(驛)·터미널, 철도·간선도로, UAM 이착륙장 등의 설치나 군부대 이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멸에 대비하여 구가 차별화

된 유일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구 공무원 및 관내의 개인, 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의 존치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이해할 수 있게 중요사업을 홍보·교육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시책 계획·추진 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모전등의 추진 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전등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중요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책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출·합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버넌스(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별로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최대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책 분야의 전문가, 지식·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주민,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반영하여 고른 계층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모전등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전등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재단법인에 조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조직위원회가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 공모전등의 참가를 위한 각종 공모절차는 조직위원회가 지명,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사업단) ① 추진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는 사업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방식, 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
2. 위원 (재)위촉·해촉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실무(이해당사자 여론 수렴, 공모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공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은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구성한다.

③ 사업단 구성을 위한 선발절차·심사기준 및 구성 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 종료까지 운영할 수 있고, 사무의 처리가 지속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 종료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존속기간, 관리주체, 업무의 범위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중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중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합의 등이 필요한 경우
4. 공모전등의 참여 대상자 심사,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취지상 소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안건 및 주요 논의 내용

4. 그 밖에 기록이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활동 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의견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이견(異見)을 존중해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자신, 가족·친지, 지인 등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시책의 비밀, 개인정보 등은 임기와 상관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체류 등 장기간 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원활한 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12조(결과의 권고 등) ① 추진위원회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도출한 의견을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권고문에는 거버넌스 설치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결사항, 그 밖의 안건 등도 포함함으로써 다루어진 모든 의제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시책의 유일성 평가) 구청장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책이 추진위원회의 권고를 잘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2. 공모전등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추진되었는지 여부
3. 구의 중요사업이 유일성 확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구청장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요사업의 홍보, 교육, 평가 등 유일성 확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차별화된 유일성 확보와 관련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및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규정)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09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때 · 곳	2022. 8. 31.(수), 14:00~16:00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층 303호)
참 석	50여 명(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주 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Ⅰ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각 지역의 생활체육 시설, 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어르신 생활체육 이용 실태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노인들이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건강증진은

물론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생활체육 참여도 높이기, 체육시설 확충, 건강관리와 생활체육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짧아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어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 정책 필요성이 제기됨

- ❍ 시군별 생활체육 현황 및 여건을 파악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이용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진단할 수 있었음
- ❍ 어르신들은 체력부족 등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높았으며, 가장 필요한 체육시설로는 노인여가시설 내의 체육시설로 조사되었음
- ❍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노인요양시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어르신 스포츠강습 주체 일원화, 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인인구 대비 체육시설 확보, 어르신 놀이터 등의 방안을 제시함

2 지정토론(4인)

① 노태현 (충남도청 체육진흥과장)

- ❍ 기대수명(83.5세)은 증가하지만 건강수명(66.3세)은 늘지 않는 문제 극복을 위해 도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에 총 84개소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생활체육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쥬’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선호 건강·취미 프로그램으로 장수체육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음
- ❍ 향후,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공모를 통해 노인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선도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확대, 수요자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발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및 처우개선 실시 등을 추진하겠음

② 최석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후생활의 질 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80.3%가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참여는 8.1%에 불과하였음

❍ 운동 참여를 위한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지만 모든 지역에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구체적 예로 경로당을 휴식 위주의 시설에 더해 운동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와 생활체육을 연계할 것을 제안함

③ 김홍식(충청남도체육회 체육진흥팀장)

❍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부양비, 의료비 지출 등이 급등하며 국가·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

고 있어 노인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체육활동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 ❍ 충청남도체육회는 중장기계획 수립(5개년, ‘19~23’)에 따라 생활 속 걷기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스마트폰 걷기 전용 「걷쥬」앱을 개발하였음
- ❍ 걷쥬 앱 가입 목표는 22년 7월 기준, 65세 어르신 4만 명이었으나 4만 8천여 명이 가입하며 초과 달성하였고, 또한 걷쥬 앱 활성화를 위해 15개 시군이 자체 이벤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음
- ❍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 걷기 운동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제시한 바, 범도민 걷쥬 캠페인 추진을 통해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④ 김혜옥(충청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 ❍ 경로당은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충남은 220개의 모범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으로 구분되며, 노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모범경로당에서는 연 70회, 일반 경로당에서는 연 8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노래교실, 마술, 건강 체조 등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횟수 및 프로그램 과목이 부족한 현실임
- ❍ 노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청중토론

-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운동할 수 있는 공간(헬스장 등)이 조성되어 있지만, 고령자를 배려한 실내운동시설은 부족한 현실임
-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체육활동 시 불편 사항 설문조사에서 운동 공간의 위치, 연령에 맞는 운동기구 부족, 운동 공간 부족 등을 답변하였음
- 또한, 체육시설이 집과 근접하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54.9%였으며, 고령자를 위한 운동 전용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운동 공간을 조성하고 고령 친화 운동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질문 : 예산군 주민]

4 정리발언

-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충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자리로,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방안들은 참석하신 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건의 사항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노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노인 건강에 맞는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 다양한 운동시설 확대, 노인전용 운동 공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결 과〉

❍ 충남도청, 충남 체육회, 충남도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노인전용 운동 공간 조성
- 노인 생활체육 참여 방안 모색
- 건강에 맞는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
-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 확대
- 「걷쥬」 사업 확대 방안 모색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청
-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체육회
-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09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제작발표회
- 대구광역시의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장 점검!
-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앞장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00초 영상공모전 당선작 발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 제작발표회

오는 20일, 1층 대강당에서 진행… 예고편 상영, 배우들과의 토크쇼도 진행
염종현 의장 “도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 의회 이해하는 계기 되길”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웹드라마 ‘지금, 의회는 36.5’의 제작발표회가 오는 20일 15시 30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한 소규모 비대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개그맨 황영진이 맡으며, ‘웹드라마 예고 영상 공개’ 및 ‘배우들과의 토크쇼’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배우들이 공개하는 촬영장 에피소드도 소개될 예정이다.

‘지금, 의회는 36.5’는 지난 2020년 ‘사랑하면, 조례?!’, 2021년 ‘정·이·로·운 의원 생활’에 이은 세 번째 의회 자체 제작 웹드라마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 ‘남궁훈’(정태우), ‘강하영(서지수)’과 의정 경력이 풍부한 3선 의원 ‘박철민’(김준배)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웹드라마의 제목인 ‘지금, 의회는 36.5’는 “도의원도 도민과 똑같은 체온인 36.5° 로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도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재밌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되는 현안으로 극명하게 나눠진 도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도의원들의 고군분투를 유쾌하게 그렸으며, 조례안 발의 과정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의정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들의 연기력이 작품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초선의원'인 남궁훈 역을 맡은 배우 정태우는 현재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 중이며, 사극부터 현대극까지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소화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남궁훈과 티격태격하지만 결국에는 '브로맨스'를 연출하는 '3선의원' 박철민 역에는 각종 영화 및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배우 김준배가 캐스팅됐고, 두 주인공의 동료 역할로 영화 '서울괴담', 웹드라마 '러브 온 그린' 등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서지수(강하영 역)도 출연한다.

조연들도 탄탄하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철인왕후'의 송민형(이상진 역), 드라마 '공작도시', '빨강구두'에서 명품조연을 맡았던 염동헌, 오랜 연극 경력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석제(김중관 역) 배우도 함께한다.

염종현 의장은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담긴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우리 1,390만 경기도민들께서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 10화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오는 10월 4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그에 앞서 오는 9월 29일에는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점에서 도민 초청 시사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9대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핵심가치 담은 새 슬로건 선정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9대 의회 출범을 맞아 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와 비전을 담은 새로운 의정슬로건으로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는 시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펼치고 시민의 참뜻을 담은 정책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대구를 상징하는 국문초성인 ㄷ, ㄱ 과 손을 맞잡은 사람 이미지를 하나의 조형으로 표현한 로고를 더해,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며 대구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앞장서고자 하는 대구시의회의 의지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정의 견제기구로서 ‘하나된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체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의회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향후 의정활동 홍보매체와 각종 공문서 및 간행물 등에 대구시의회 홍보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시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설적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장 점검!

제9대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핵심가치 담은 새 슬로건 선정

부산광역시의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호)는 9.14(수) 유치추진 대상 사업지(북항인근)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철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하였으며, 당초 부산시 어업지도선을 탑승하여 해상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태풍 무이파의 영향에 의한 선박 피난으로 북항 홍보관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추후 다른 일정에서 엑스포 유치추진 대상지의 선상조망을 통해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 특위는 북항 홍보관 5층에서 조유장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한편, 엑스포 유치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도 적극 살펴보았다.

이날 현장에서 강철호 특위 위원장은 “유즉필생, 부즉필사. 유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는 말을 항상 하고 다닌다. 우리 부산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과 마찬가지다. 어려운 점은 함께 해결해가며 꼭 유치에 성공하자”면서 “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해 의회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지난 7일 최종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BIE 조사단의 실사를 잘 넘기 위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를 부탁했다.

부산광역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는 향후 대내·교섭활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등록엑스포 유치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앞장

9월 15일 제310회 1차 정례회부터 첫 유튜브 생중계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양방향 소통강화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창)는 9월 15일 개의되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본회의 및 예결특위 회의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2019년 10월부터 시의회 정책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왔으며, 이번에 본회의와 예결특위까지 유튜브 방송을 확대하여 실시간 댓글달기를 통해 시민과 양방향 소통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공식 유튜브채널(youtube.com/광주광역시의회)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으며, 유튜브 앱에서 “광주광역시의회”를 검색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의 유튜브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003년 2월 제120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wangju.go.kr)를 통해 실시간 방송 송출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유튜브 생중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홈페이지 생방송과 함께 유튜브 생중계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활짝 열린의회, 양방향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활동 100초에 담다’ 100초 영상공모전 당선작 발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 100초에 쏙~! 시민 영상공모전 당선작 시상
7일 일반부와 학생부 각 5편 시상…공식 채널 통해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7일 ‘출범 10주년 기념 영상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10편을 발표하고 일반부 및 학생부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앞서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을 주제로 전국 단위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첫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세종을 비롯한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 지역민들이 참여해 균형발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1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의회사무처는 주제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출품작을 심사했으며 일반부와 학생부 각 5편, 총 10편의 우수작 가운데 으뜸상, 버금상, 누리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병민 씨는 ‘세종시의회가 만드는 세종세상’으로 일반부 으뜸상을, 박채희 양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알기 쉽게 제작해 심사위원 최고점으로 학생부 으뜸상을 받았다.

또한 ‘심야약국 지원조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한수진 씨와 ‘올바른 입양교육’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낸 이소민 양이 버금상을 수상했으며 ‘주민조례 온라인 청구’와 ‘공유자전거 지원조례’를 주제로 한 출품작 등 6편이 누리상으로 선정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번 영상공모전은 세종시의회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10년도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담고 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세종시의회를 조명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세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 발 더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공모전 수상작은 홈페이지와 SNS 등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홍보 채널에 게시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09



최근 제·개정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2. 9. 15.] [법률 제18977호, 2022. 9. 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 · 증여 ·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과 제7항은“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1 제정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 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 ·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 접수의 제한기준(제2조 및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 접수를 제한하는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으로 나누어 그 위반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8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제3조)

1)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기부절차 및 방법과 답례품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주최 · 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 ·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 독려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

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와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라. 답례품의 한도와 금지품목(제5조)

1)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금액한도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안 되는 물품의 범위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 · 전자제품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으로 정함.

마.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 운용 현황 정보 공개(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내역,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 등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거래 대상과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기획자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강화(제8조, 제15조, 제25조 및 제36조)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임원의 대출잔여금액이 그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대출잔여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완화(제9조, 제17조, 제26조 및 제37조)

1)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기업의 증권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제34조)

1)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0억원 이상으로 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

2)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종전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모두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9. 10.] [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8861호, 2022. 5.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오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 정비(제2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부패범죄를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등으로 정의하고,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죄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와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죄 등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법률에 따른 부패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경제범죄를 생산 · 분배 · 소비 · 고용 · 금융 · 부동산 · 유통 · 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경제범죄에는 횡령 · 배임죄 등 「형법」상 경제범죄와 보험사기죄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경제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 · 도주 · 범인은닉 · 증거인멸 · 위증 · 허위감정통역 · 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 · 수사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나. 송치받은 사건 등과의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현행 제3조 삭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개정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 · 분배 · 소비 · 고용 · 금융 · 부동산 · 유통 · 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 · 도주 · 범인은닉 · 증거인멸 · 위증 · 허위감정통역 · 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범죄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선거범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다.

■ [별표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 2022. 9. 8.>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죄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41조, 제227조 및 제229조(제227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국가정보원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죄
   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
   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
3.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나. 「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죄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죄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죄
   사.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4.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0호(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7조에 해당하는 죄

나. 「정당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다.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5.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 「병역법」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다.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

라. 「의료법」 제88조제2호 및 제89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

6. 보조금 · 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죄

다. 「사립학교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죄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해당하는 죄

7. 범죄수익 · 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준용 또는 신분을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범죄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별표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 2022. 9. 8.>

경제범죄(제2조제2호 관련)

1. 「형법」상 경제범죄: 「형법」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7조 및 제248조로 한정한다), 같은 편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부터 제315조까지), 같은 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 제324조 및 제327조로 한정한다), 같은 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정한다)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2. 기업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및 제54조에 해당하는 죄
   나.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25조의2, 제626조부터 제629조까지 및 제634조에 해당하는 죄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3. 조세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 및 제276조에 해당하는 죄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라. 법률 제1609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죄
4. 금융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금융업 관련 경제범죄
      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죄
      2)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해당하는 죄
      3) 「보험업법」 제197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 및 제204조에 해당하는 죄

4)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6)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같은 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7)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죄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9)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죄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 금융거래 관련 경제범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죄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죄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644조, 제644조의2, 제647조부터 제654조까지, 제657조 및 제658조에 해당하는 죄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죄

5. 공정거래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죄

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해당하는 죄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마.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해당하는 죄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6. 기술 및 자원 보호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죄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

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죄

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죄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

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죄

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7. 지식재산권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나. 「상표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라. 「특허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및 제229조의2에 해당하는 죄

8. 개인정보 · 정보통신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항 제3호 · 제4호, 제7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죄

9. 부동산 · 건설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죄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에 해당하는 죄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에 해당하는 죄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에 해당하는 죄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및 제142조에 해당하는 죄

바.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도시개발법」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죄

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

10. 보건 · 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마약류를 단순 소지 · 소유 · 사용 · 운반 · 관리 · 투약 · 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죄

라. 「의료법」 제87조, 제87조의2제2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죄

11. 경제범죄 관련 조직범죄: 「형법」 제114조(이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12. 사행행위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나. 「경륜 · 경정법」 제26조, 제27조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죄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해당하는 죄

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마.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에 해당하는 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준용 또는 신분을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

※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범죄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별표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신설 2022. 9. 8.>

사법질서 저해 범죄(제2조제3호 관련)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해당하는 죄
3. 「형법」 제2편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부터 제151조까지), 같은 편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 제154조 및 제155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준용하여 처벌하는 범죄

09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질의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질의
-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관련질의
-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질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질의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질의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관련질의
-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질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질의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지?

[의견22-0197, 2022. 8. 18., 경기도 가평군]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의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무 중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의 사무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평군에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가평군수에게 위임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2018년 1월 11일 경기도조례 제5817호로 일부개정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구 경기도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여 학

교용지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무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면서, 구 경기도조례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방식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하여 경기도 교육정책과의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중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키므로, 위임 여부 및 위임하려는 권한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의 개정 연혁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는 경기도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

[의견22-0211, 2022. 8. 25., 경상남도]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맡기고, 위임을 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의 법적 효과는 수임자에게 귀속됩니다.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권한의 위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례·규칙에서 정함이 원칙이고, 개별법 규정에 권한의 위임 허용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살피건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이나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지원(제8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제9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제16조) 등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시·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부산물법에 규정된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2023. 4. 4.)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 관련

질의요지

2023. 4. 4.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제1항에서는 202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3. 12. 31.까지 연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10, 2022. 8. 31., 전라북도]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세율경감, 세액가면 및 세액공제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023년 4월 4일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

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의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면조례 제9조의2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자동차산업·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책사업 등에 신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입법취지와 '특정지역', '특정산업·특정시설'이라는 문구 앞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산업·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과세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라북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회복 효과,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질의요지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

[의견22-0212, 2022. 9. 1., 전라북도 김제시]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김제시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일자리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제시조례 제8조에서는 해당 위원회는 조례 제정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례 전체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입법이 되었는바 그 존속기한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실제로는 조례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제시조례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위원회의 운영도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 등 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후대응기금”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송파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44, 2022. 9.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발안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발안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

립기본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과 제130조제1항에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30조에 따라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조례의 규정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하 “송파구조례안”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송파구위원회”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송파구조례안에서 별도로 구청장이 송파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구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송파구조례안 제15조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송파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송파구위원

회는 구청장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권한행사에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파구조례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송파구조례안 제16조에서와 같이 송파구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5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는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 · 군 · 구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에 관한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에 관한 사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직속기관 또는 제127조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집행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3호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각 호의 기관 · 단체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한 계획 수립 ·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직속기관 또는 제127조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집행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3호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주민이 청구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등 관련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이용 의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031, 2022. 3. 8., 경상북도 의성군]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서는 법 제34조제9항 전단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제1호),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은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공사는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의 전자조달시스템등 이용 의무에서 제외되는데 이와 달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소규모공사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할 의무를 부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할 의무를 부과받게 될 것인바, 질의요지와 같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함께 위임되는 것인지 등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

가.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되는 사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인지?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가 함께 위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무를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다.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는 위임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의견22-0248, 2022. 9. 6., 인천광역시]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직접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한다) 제17조제

1항제1호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한 등이 위임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위임되었는지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인천시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언 상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위임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위임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군수·구청장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까지도 함께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이나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는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권한의 위임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권한은 대외적으로 수임기관에 이전되고, 위임을 한 기관은 그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게 되며, 수임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상 소송의 경우에도 수

임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본다면, 위임기관이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 위임의 법리에 반하므로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직접 시행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8항에 따르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군수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의 권한자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행자의 변경 지정은 별도로 구분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 법 제11조제8항 각 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그 목적과 성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무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의 권한자를 각각 다르게 정하여 운영하려고 한다면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무는 위임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천시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견22-0248, 2022. 9. 6., 인천광역시]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아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주민센터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로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된 사람 등의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자치회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사유로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거나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주민센터조례와는 달리 별도로 재위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회조례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하

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주민센터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이하 “재위촉 제한규정”이라 한다)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쓰는 표현으로, 준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에 관하여는 ○○조례 제○조를 준용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회조례는 주민센터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추적용’이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여 법적 규율의 흠결을 보충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경우에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회조례가 이미 위원의 자격(제7조)·선정(제8조)·임기(제17조)·해촉(제19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은 일정기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불이익한 내용이므로 주민센터조례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주민자치회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지설명

충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 15일부터 14일 간 행감계획 승인·추경예산안 심의 등 84개 안건 심사 -

- 5분발언 인원 제한 해소… 5분발언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 통해 정책대안 제시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부터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14일간 84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12대 의회의 첫 예산안도 처리한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8488억원(8.71%)과 1조 7223억원(36.3%)이 각각 증액된 도와 교육청의 추경안을 면밀히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실·국의 출연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제출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제12대 의회에서 5분발언 인원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현재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발언 신청을 마쳤다.

22. 9. 14. 보도자료

MEMO

의정정보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2-09호

• 발 행 일 | 2022년 9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